

2020년도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3. 9.(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2건(안전번호 제2020-6016호~6076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6016호는 2010년에 공표된 것으로 보이는 평가판(trial version) SW의 인증키 및 해당 SW 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6017호~6020호는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블로그 등에 게시된 중국, 일본 방송 프로그램 불법복제물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8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44건(안전번호 제2020-495호~538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개 안건은

가결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2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개 안건은 부결함(2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전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6016호~6076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22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안전번호 제2020-6016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601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이용자가 2019. 6. 29. “○○○○○○○○ ■■■■ 다운로드 (제품키 정품인증)”라는 제목으로 ‘○○○○○○○○ ■■■■’ 평가판 인증 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및 △△△△△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다수의 팝업 광고와 비밀 댓글이 있음. △△△△△

기능 제한이 아닌 기간 제한으로 알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시리얼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정품처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불여지가 있음. 하지만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리얼번호가 SW trial 버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되지 않음.

- B 위원 : SW를 업데이트하려면 ○○○○○○○○ 서버에 접속하여 시리얼번호를 체크해야 함. 해당 시리얼번호가 불법이라면 업데이트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이 건은 권리자의 요청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보호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임.
- A 위원 : 같은 생각임. 평가판이라는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므로 심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601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정권고 조치는 필요 없어 보임.
- A 위원 : SW 평가판은 대중에게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한 저작물인바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임.

- D 위원 : 해당 SW는 기간 제한 체험판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안은 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 이견 없이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01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017호~6020호는 2020. 2. 1.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총 4개 안전, 36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0-601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중국 방송 프로그램 ‘♡♡♡♡♡♡♡♡♡’ 1화~6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저작물은 종종 신고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20-601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일본 방송 프로그램 ‘◇◇◇◇◇’ 1화~2화를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6019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일본 드라마 ‘ㄹㄹㄹㄹ’ 시즌 1의 1화~11화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안전번호 제2020-6017호~6020호의 복제·전송자는 모두 동일인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6017호~602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사안들은 시정권고 해야 함.
- D 위원 : 권리자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하고 있음.
- C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017호~602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21호~6076호는 모두 불법복제된 음악,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음악 '막걸리 한잔 (가수: 영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22호의 음원파일은 2020. 1. 30. 발매된 곡으로 앨범 '내일은 미스터트롯 데스매치 PART1'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내일은 미스터트롯' 음원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음악 'ON (가수: 방탄소년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23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MAP OF THE SOUL : 7'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해당 앨범의 수록곡인 약 19곡을 압축 파일로 판매하고 있음.
 (영화 '히트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27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6. 현재 상영 중이고, 2020. 2. 25. 극장동시 VOD 서비스 시작함. 권상우 주연의 영화로 코미디, 액션 장르임.

(영화 '남산의 부장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40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6. 현재 상영 중이고, 2020. 2. 18. 극장동시 VOD 서비스 시작함.

(영화 '클로젯'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41호는 2020. 2. 5.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9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6. 현재 상영 중이고,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0,000원에 대여, 14,9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화는 미스터리, 드라마 장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6021호~607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D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021호~6076호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016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6017호~6076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0면부터 20면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95호~538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개 계정에 대해서는 가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2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개(부결 사유 중복 2건)는 부결함.”

3.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3. 16.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